

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
사회(임팩트)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기금 출자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59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출일자 : 2018년 3월 29일
- 라. 회부일자 : 2018년 4월 4일

2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·
융자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돌봄·주거 등 사회문제를
해결하고자 2013년도부터 사회투자기금을 조성·운영하고 있음
- 나. 서울시 사회적금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사회투자(임팩트투자)금
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투자조합 결성·운용하고자 「지방재정
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자 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3. 출자개요

- **출자근거** :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 5항
 -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지방자치단체 기금 투자 가능
 - **추진 필요성**
 -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을 위한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 필요
 - 투자를 통한 市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체계 구축
 - [현재] 재정지원·융자 → [개선] 재정지원·융자 + 투자·전문보육
- ※ (중소벤처기업부)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

 - 투자 후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해 뛰어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임
 - '16년 투자기업들의 '15년 대비 고용증가율은 약 20%로 괄목 성장, 벤처투자가 기업의 고용 증가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발표
- **추진 방향** : 사회투자 전문기관과 투자조합 조성 및 사회투자기금 출자
 - 서울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투자·보육 연계 지원
 - 사회적경제기업 투자 선순환 생태계 조성(투자→성장→자금회수→재투자)
 - **조성형태** :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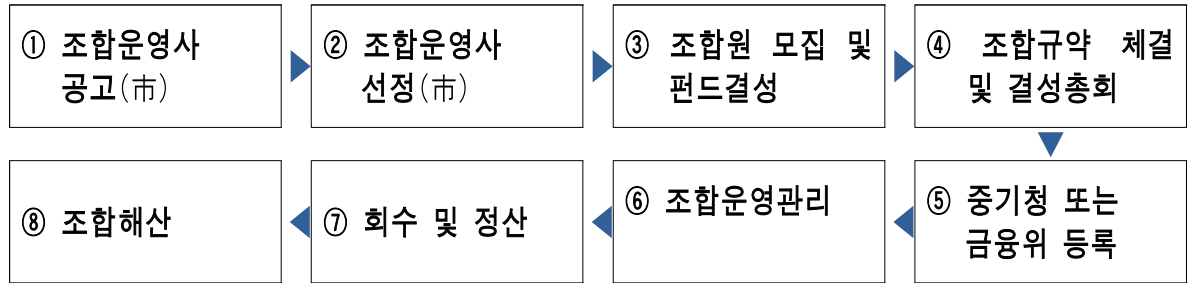
조성형태	근거법령	투자대상	투자의무비율	존속기간	설립주체
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	중소기업 창업지원법	창업중소기업, 벤처기업, 기술·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	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	5년 이상	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(자본금 50억원) 신기술사업금융업자 (자본금 100억원)
신기술사업 투자조합	여신전문 금융업법	신기술사업자	-	-	신기술사업금융업자 (자본금 100억원)
한국벤처 투자조합	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	중소기업, 벤처기업 등	-	5년 이상	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

- **조합 조성·운영절차**
 - 조합 존속기간 : 8년 이상
 - 투자조건 : 투자대상에 서울시 출자금의 150% 이상 투자

- 투자대상 (A+B+C 모두 만족)

구분	대상	비고
지역(A)	서울 소재	• 본사, 공장 또는 사업소가 서울에 소재
정의(B)	사회적경제 기업 등	• 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의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
형태(C)	창업중소기업, 벤처기업 등	•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의한 창업기업(7년 미만) •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• 「중소기업기술 혁신촉진법」에 의해 선정된 기업 •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의한 중소기업

[조합 조성 및 운영 흐름도]



○ 출자계획

- 출자재원 : 사회투자기금 중간지원협력사업 투·융자사업비
- 출자금액 : 최대 10억원

○ 운용사 공모방법 : 제한경쟁입찰

- 신청자격 :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10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
- ※ 임팩트 투자 실적 또는 임팩트 투자 펀드 운용 실적 필요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용중인 사회투자기금의 출자를 통해 사회(임팩트)투자조합을 조성하기 위해 출자 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

나. 사회(임팩트)투자 조합 조성

- 사회(임팩트)투자란 투자행위를 통해 수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, 일종의 착한투자로 주목받고 있음.
-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)는 사회투자금융기관과 함께 사회(임팩트) 투자조합을 조성하여 기존 사회투자기금을 통한 재정 지원 및 융자의 역할을 넘어,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투자·성장시키는 사회적금융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임.
- 투자조합이란 조합원이 출자한 자금을 바탕으로 업무집행조합원(운용기관)의 자금운용을 통해 유망한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고, 투자 후 발생한 투자수익은 조합원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구조로 운용됨.

- 특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운용기관이 투자조합을 전적으로 맡아서 운용함으로써 투자위험에 대한 분산 및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조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
- 시는 2018년 사회투자기금운용계획(안)을 통해 사회(임팩트)투자조합(이하 “투자조합”)에 대한 출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기 편성하였고, 해당 예산으로 최대 10억원을 출자하여 최소 30억원 규모의 투자조합을 조성할 예정임.
 -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투자조합의 조성 형태는 설립주체와 투자대상에 따라 결정됨.
- 조성된 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은 서울에 소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인 동시에 창업중소기업, 벤처기업, 기술·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신기술사업자인 기업으로, 투자조합은 시 출자금의 150% 이상을 해당 기업들에 투자해야 함.
- 그러나 투자의무비율인 150%의 투자 이후에는 사회적기업이 아닌 일반투자도 가능한 상황으로, 동 사회투자조합의 목적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금융의 선순환인 만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 의무비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다. 사회(임팩트)투자조합 출자의 적정성

- 시는 사회투자기금의 조성 이후, 331개의 기업에 817억원을(시

기금 635억원, 민간기금 182억원) 융자하였으며, 이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사회적기업은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부족한 현실임.

- 또한 시는 이미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자금사정이 취약한 사회적 기업에 저리로 융자 및 비융자지원을 하고 있어 사회(임팩트)투자 조합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중복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행태라고 판단되며 재원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감하기 어려움.
- 더욱이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고갈 우려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수익률을 예측할 수 없음은 물론 원금의 회수도 보장할 수 없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임.

※2017년도말 사회투자기금 현재액	125억 2,000만원
2018년도말 사회투자기금 (예상)현재액	58억 7,100만원

- 사회투자기금의 조성 초기, 계획에 비해 민간의 기부금이 현저히 낮아 현재 수행기관을 통한 매칭형태로 기금을 운용했던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사회투자 및 임팩트 투자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조합을 조성할 민간투자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임.
- 실제로 지난해 투자조합의 운용사 선정을 위한 공고에는 단 한곳의

기관만이 응시하였고 그마저도 목표수익률 등이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판정을 받아 공모기준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, 현재까지 투자조합의 목표수익률 등 세부적인 조건 변경 및 재공모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세우지 않고 있어 향후 투자조합의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임.

- 한편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¹⁾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및 출연에 대한 의회동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 출자·출연을 방지하고자, 보통 예산편성 전 출자·출연 여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음.
- 그러나 본 동의안의 경우 이미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, 이후 출자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.
 - 현재 법령상 지방자치단체는 출자·출연 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을뿐, 예산편성 전이라는 시기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.
- 법령상 반드시 예산편성 전 동의절차를 이행하라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절차가 시의 낭비성출자를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예산편성 이전에 출자동의를 받는 것이 절차적으로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.

1)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